

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운영규정

제정 2004. 1. 28. 개정 2006. 2. 24.
개정 2007. 6. 26. 개정 2009. 2. 2.
전부개정2012.12. 7. 개정 2015. 7. 7
개정 2019. 7. 17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관의 시행 및 순천대학교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은 순천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산학협력사업 및 학술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하부조직간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·조정한다.

제3조(업무) 산학협력단은 「순천대학교 학칙」 제5조의2제1항 및 산학협력단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.

제2장 조직

제4조(단장 등) ① 단장은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부단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하부조직) ① 산학협력단에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과 같다.

1. 지식재산관리센터
2. 산학협력지원센터
3. 대학,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.)
- ② 지식재산관리센터는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,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③ 산학협력지원센터는 산학협력 관련 대외업무, 학생현장실습 관리, 가족회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15.07.07.)
- ④ 사업단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한다.
- ⑤ 지식재산관리센터, 산학협력지원센터의 장 및 사업단의 사업총괄책임자는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⑥ 산학협력단에 소속되는 사업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장 회계관리

제6조(회계관리)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관리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.

② 제1항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장 운영위원회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 및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부단장, 산학협력과장, 연구진흥과장과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 (개정 2015.07.07., 2019. 7. 17.)

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계획 수립
2. 산학협력단정관 및 운영규정 개·폐
3. 산학협력 및 정부지원사업 신청·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
4. 산학협력단 및 소속 사업단의 예·결산안
5. 학술진흥에 관한 기획과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6. 학술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
7. 학술활동의 지원방침에 관한 사항
8. 부속연구소의 설·폐 및 평가에 관한 사항
9. 학술연구비 지원과제 심사에 관한 사항
10. 연구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의 산학협력 및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

제9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장 산학협력위원회

제10조(산학협력위원회) ① 이 대학교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산업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기구로 산학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부단장과 기업체·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,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산·학·연·관 협동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금 조성 및 관리
2. 산·학·연·관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
3. 산·학·연·관 교육훈련 및 학생취업 지원사업 구축
4.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제12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장 보칙

제13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2. 12. 0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순천대학교학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② 「순천대학교 연구교수 규정」 제3조제3항 중 “순천대학교학술진흥위원회”를 “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③ 「순천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」 제16조제3항, 제20조, 제23조 중 “학술진흥위원회”를 “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④ 「순천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 중 “순천대학교학술진흥위원회”를 “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⑤ 「순천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원 규정」 제4조제3항, 제6조의3제6항, 제8조제2항 및 제3항, 제9조제3항 중 “학술진흥위원회”를 “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⑥ 「순천대학교 학술교류협력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2항 중 “순천대학교학술진흥위원회”를 “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⑦ 「순천대학교 사무분장규정」 제12조제12호 중 “학술진흥위원회”를 “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「순천대학교학술진흥위원회규정」은 폐지한다.

부 칙(2015. 7. 7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7. 17.> (순천대학교 학칙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산학연구지원과장”을“산학협력과장, 연구진흥과장”으로 하고, “13인”을 “15인”으로 한다.

②부터 ⑨까지 생략